

## 휴학처리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 제18조에 의거 휴학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휴학의 구분)** 휴학은 일반휴학, 군입대휴학, 특별휴학으로 구분한다.

**제3조(휴학의 절차)**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에 합당한 사유를 기록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4조(휴학의 사유)**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학을 할 수 있다.

① 일반휴학

1. 질병으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1선 이상의 (입원)치료를 요할 때(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)
2. 미등록자로 가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(가계곤란의 구체적 사유 및 입증 자료 첨부)
3. 직장인으로 통학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의 지역으로 전보되었을 경우(재직증명서 및 입증 자료 첨부)
4.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(입학허가서 등 증빙서류 첨부)
5. 9학기 이상 재수강자로 해당 학기에 설강과목이 없을 경우 (학부(과)장의 확인서 첨부)

② 군입대휴학 : 군 의무 복무자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(일반휴학 중인 자는 반드시 군 휴학으로 변경, 등록마감일 이후 입대자는 등록을 필한 자 : 현역병 입영통지서 첨부)

③ 특별휴학 :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(입증할 만한 자료 첨부)

1.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
2. 휴학이 만료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
3.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총장이 휴학을 권고한 자

**제5조(휴학의 기간)** 휴학의 기간은 휴학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, 휴학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시작한다. 단, 휴학기간 만료 후 해당 학기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1선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.

① 일반휴학 : 1회에 1년(2학기)을 원칙으로 하되, 휴학사유 소멸시 6월(1학기)로 단축할 수 있다. 단, 9학기 이상 재수강자의 휴학기간은 6월(1학기)로 한다.

② 군입대휴학 : 군 의무 복무기간으로 한다.

③ 특별휴학 :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휴학사유 소멸 시 6월로 단축할 수 있다. 단,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**제6조(휴학원 제출시기)** 휴학원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.

- ① 학기 중(방학 중 제외) : 질병, 돌발적인 사고 등
- ② 등록기간 내 : 가사, 유학 및 어학연수
- ③ 연중 수시

1. 일반휴학 (해당학기 수업일수 1/4선 이내에 허가)

2. 군 휴학자 : 학기 중에는 입대일 14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, 등록 마감일 이후 입대자는 등록을 필한 자

3. 직장인 근무지 변경

**제7조(휴학의 제한)** ① 신입생은 군 입대 휴학만 허가하며,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.

② 휴학은 통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군 입대 휴학과 9학기 이상 재수강자는 이에 포함되지

않는다.

③ 등록마감일 이후 미등록자는 휴학원을 제출할 수 없다. (군 입대자 포함)

**제8조(귀향신고 및 학적변동)** 군 입대로 휴학을 허가받은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, 그에 따른 학적 변동 처리를 하여야 한다.

1. 재학 중 군입대 휴학한 학생은 일반 휴학으로,
2. 일반휴학 중 군입대 휴학한 학생은 군입대 휴학으로,
3. 수업일수 부족자 또는 미등록자가 등록기일 경과로 등록이 불가할 경우에는 일반휴학 할 수 있다.

**제9조(휴학자의 성적인정)** ① 중간고사를 필한 후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휴학하는 자 중 해당학기 성적이수를 원하는 자는 조기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단, 휴학원 접수일로부터 휴학기간이 진행되므로 출석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

② 조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 접수일 2주전부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등록금 인정)** 휴학당시의 학기를 이수한 자는 복학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부 칙(2000. 3. 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1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